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89
----------	------

2021년 3월 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2월 5일 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2. 회부일자 : 2021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3월 3일 상정·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화숙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자폭탄피해자의 지원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효과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나.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구체화함.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와 그 자녀 그리고 손자녀에 대해 지원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피해자의 지원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 제2조 정의조항에서 지원대상인 원폭피해자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폭피해자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과 그 자녀 및 손자녀로 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개정안 제4조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①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의료 및 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③원폭피해자 추모에 관계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으며, 이어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이어서 개정안 제7조에서는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나.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2조)

- 상위법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그 피해자를 원자폭탄이 투하된 당시 일본의 히로시마 혹은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혹은 당시 임신 중인 태아 등¹⁾으로 하고 있음.
 - 2019년에 실시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되어 있는 생존자는 2,283명이며, 이중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214명인 것으로 나타남.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원자폭탄 피해자는 1세대와 2세대 모두에서 일반인의 장애 발생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²⁾ 이에 개정안에서는 그 지원 대상을 자녀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입법취지에 있어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원자폭탄 피폭 후유증의 대물림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으로 지원 대상을 자녀 및 손자녀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다. 피해자 지원사업 및 의료비 지원 등 (안 제4조, 안 제5조)

- 동 개정안에서는 원폭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료 및 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추모와 관계된 사항 등의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피해자”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2.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킬로미터 이내에 있었던 사람
3.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2) 보건복지부, 「한국 원폭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04.24.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시립병원을 통해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대한적십자사가 한국과 일본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일본정부에서 발급하는 건강수첩 소지자 또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1세대)이며, 의료비와 진료보조비 외에 연 1회의 종합건강검진, 장례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 현황 〉

한국정부		일본정부	
지원대상	대한적십자사 등록자	지원대상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
진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63명) 진료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상한액(30만 엔) 이내 : 진료비 전액 ▪ 연간상한액 초과 : 일본의료수가 재산정 후 지원
장제비	150만 원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장례비	20만6000엔
건강검진비	연 1회(35만 원) (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건강검진비	연 1회(35만 원)
진료보조비 (등록자 전원대상)	매월 10만 원	원호수당*	4종 중 1종 수령 * 의료특별수당(140,000엔), 특별수당(51,700엔), 건강관리수당(34,430엔), 보건수당(17,270엔) 중 질병의 유무 경중에 따라 월정액 수령
복지회관 운영지원	운영비 전액(연 15억 원) (입주자 110명)	도일(일본 의료기관) 치료	희망자
관련 근거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관련 근거	① 원자폭탄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원호법) ② 재한원폭피해자지원사업 등 업무협약
연간 소요액	49억 원	연간 소요액	204억 원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 중

-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지원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사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보충적 성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므로 개정안 제5조의 지원사업은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와 관련한 사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마.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제7조)

- 동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자문 및 평가 외의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 등의 자문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3)에서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 개최 횟수, 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 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설치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종합의견

- 동 조례개정안은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 이외의 원자폭탄 피해자의 범위를 자녀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원자폭탄피해자의 피폭 후유증이 대물림 되는 것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189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2월 05일
발 의 자 : 김화숙, 경만선, 권수정,
김달호, 김상훈, 김용석,
김용연, 김제리, 김혜련,
박기열, 송도호, 송재혁,
이병도, 임종국, 장상기,
황인구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원자폭탄피해자의 지원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효과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나. 위원회의 구성방법을 구체화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 · 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람”을 “사람과 그 자녀 및 손자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5호) 중 “그 밖에 원폭피해자”를 “원폭피해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의료 및 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원폭피해자 추모와 관계되는 사항
4. 각 호 지원에 따른 재정계획

제7조를 삭제하고,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 제7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원폭피해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관 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를 “기능을 수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

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의 자문
2. 지원계획의 평가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원폭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 시장은 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원폭피해자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치료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u>사람</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 ----- --- <u>사람과 그 자녀 및 손자녀</u>--- -----.</p>
<p>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u>추진목표 및 추진방향</u></p> <p>2. <u>추진방법</u></p> <p>3. <u>재원 조달방안</u></p> <p>4. <u>유관기관과의 협력</u></p> <p><u><신 설></u></p>	<p>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 ----- ----- ----- -----.</p> <p>② ----- -----.</p> <p><u><삭 제></u></p> <p>2. <u>의료 및 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u></p> <p>3. <u>원폭피해자 추모와 관계되는 사항</u></p> <p>4. <u>각 호 지원에 따른 재정계획</u></p> <p>5. <u>그 밖에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u></p>

5.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제5조 (생략)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

사항

1. 원폭피해자-----
-

제5조(원폭피해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원폭피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② -----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 수립에의 자문
2. 지원계획의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2. 원폭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한 세부사항은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 설>

3. ----- 위원장-----

<삭 제>

<삭 제>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시민단
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4. 소관 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
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
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
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8조 (생략)

제11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신 설>

제10조 (생 략)

제10조(원폭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 시장은 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원폭피해자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치료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문서번호

202102020000002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여차민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02.02

회신일 : 2021.02.02

내용문의 : 02-2180-7942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원폭 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를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10조(원폭피해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을 신설함에 따라 자녀 및 손자녀가 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치료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치료(진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치료(진료) 지원 비용 등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안 제5조(원폭피해자 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다양한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기타 개정 내용은 비용의 발생과 무관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